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및 이용료 지급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서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투자자예탁금이용료)에 따라 은행이 지급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예탁금」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2. 「별도예치」라 함은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예탁금 예치·신탁방법)

① 은행은 증권금융회사인 한국증권금융에 홍콩상하이은행 명의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탁예수금」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증권금융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다.

② 전①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는 투자자예탁금액은 자본시장법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에 따라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의 100분의 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제4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은행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투자자예탁금 비율로 산정하여 해당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연결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09.5.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